

#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127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9월 3일  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- 박석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제1982호)과 박춘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제2032호)을 일괄 심사한 결과,
-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「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대안)」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 2. 대안의 제안사유

- 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(연차별 가로수계획)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여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·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하는 가로수 조성·관리 계획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3. 대안의 주요골자

가. 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

(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삭제, 안 제4조의2 신설)

나.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

(안 제4조2제1항 신설)

다.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해당 관리청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(안 제4조2제2항

신설)

라.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(연차별 가로수계획 등)을 조정함(안 제7조의2)

##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1.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
2. 가로수 현황 분석
3. 지역별·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
4.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 방안
5.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 관한 지침 등

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 수립 등) ① 관리청은 제4조의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가로수 조성·관리 계획(이하 “연차별 가로수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가로수의 조성·관리 현황
2.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, 옮겨심기, 제거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성

· 관리 사업의 대상, 방법 및 사후관리

3.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

4. 가로수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

5. 가로수의 월별 관리 계획

6. 그 밖에 관리청이 가로수 조성·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관리청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청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포해야 한다.

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7조의2제2호 중 “가로수 바뀌심기 및 신규식재”를 “연차별 가로수계획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5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 및 진단조사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거나 진단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4조(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</li> <li>2. 가로수 현황 분석</li> <li>3. 지역별·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</li> <li>4.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 방안</li> <li>5.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 관한 지침 등</li> </ol> <p>② 관리청은 제1항의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(이하 “연차별 가로수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</p>	<p>제4조(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</li> <li>2. 가로수 현황 분석</li> <li>3. 지역별·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</li> <li>4.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 방안</li> <li>5.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 관한 지침 등</li> </ol>			

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4조의2(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 수립 등) ① 관리청은 제4조의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(이하 “연차별 가로수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가로수의 조성·관리 현황
2.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, 옮겨심기, 제거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성·관리 사업의 대상, 방법 및 사후관리
3.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
4. 가로수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
5. 가로수의 월별 관리 계획
6. 그 밖에 관리청이 가로수 조성·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관리청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청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.

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연차

제7조의2(가로수 심의위원회)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1. (생략)
2. 가로수 바뀌심기 및 신규식재에 관한 사항

제11조(가지치기) ① ~ ④ (생략)

⑤ 관리청은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⑥ (생략)

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7조의2(가로수 심의위원회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연차별 가로수계획-----  
-----

제11조(가지치기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⑤ (현행 제6항과 같음)